#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01 발의연월일: 2024. 11. 4.

발 의 자:천준호·이해식·김 윤

박은정 · 김현정 · 민병덕

주철현 · 오기형 · 추미애

박홍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 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'영장없는 계좌추적'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.

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(2022년 7월 ~ 2024년 6월)들어 연 평균 14,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(2020년 1월 ~ 2022년 6월)의 6,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

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, 제공,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

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.

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. 공문 하나당 100명, 1,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, 금감원의 '영장없는 계좌추적' 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,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, 금융거래 정보 명의인 수,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,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조, 제4조의2 및 제4조의4).

#### 법률 제 호

#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"를 "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"을 "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"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"제3호"를 "제3호·제4호"로 한다.

제4조의4 중 "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"를 "요구기 관 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제출명령, 영장, 정보제공요구서 건수
- 2.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요구문서 건수(개별 법률에 따라 문서로 거래정보제공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3.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명의인의 수
- 4.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계좌의 수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도 적 용한다. 다만, 제4조의3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	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 -
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	
명의인(신탁의 경우에는 위탁	
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)의	
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	
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	
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이	
하 "거래정보등"이라 한다)를	
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	
서는 아니 되며, <u>누구든지 금융</u>	<u>누구든지 거짓된</u>
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	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
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	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
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	
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	
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	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	
하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각 호[종전의 금융실	<b>4</b>

명거래에관한법률(대통령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 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 급재정경제명령(법률 제5493호 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제4조제1항 각 호 를 포함한다]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 며,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 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. 다만, 금융위원회 또는 금 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 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 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 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u>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</u>
<u>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</u>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
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#### ⑤ · ⑥ (생 략)

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의 통보) ① 금융회사등은 명 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·제2호(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 외한다)·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(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)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, 사용 목적, 제 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 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다.

### ② ~ ⑤ (생략)

제4조의4(금융위원회의 업무) 금 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 구, 제공, 통보 및 통보유예 현 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 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
의 통보) ①
<u>제3호·제4호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4(금융위원회의 업무)
요구기관
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
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

	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
	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1.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
	제출명령, 영장, 정보제공요구
	<u>서 건수</u>
<u> &lt;신 설&gt;</u>	2.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
	요구문서 건수(개별 법률에
	따라 문서로 거래정보제공등
	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
<u>&lt;신 설&gt;</u>	3.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
	은 명의인의 수
<u>&lt;신 설&gt;</u>	4.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
	은 계좌의 수